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921호)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5. 7. 4 고 성 군 수

나. 회 부 일 자 : 2005. 7. 5

다. 상 정 · 의 결 일 자 : 2005. 7. 14 총무위원회 상정 · 의결

2. 개정이유

- 최근 생계형 사건·사고의 증가 등으로 사회복지문제가 이슈화됨에 따라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선이 과제로 대두되어,
-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합리적 개편으로 사회복지 종합기획·조정기능 보강과 능동적인 대처를 위한 사회복지 전담인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7명을 증원함(안 제2조)

구분	현행	조정	증감
정원의 총수	651명	658명	7명
1. 집행기관의 정원	637명	644명	7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4명	14명	-

나.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은 「별표1」에 규정함.(안 별지)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최근 생계형 사건·사고의 증가 등으로 사회복지문제가 이슈화됨에 따라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선이 과제로 대두되어 사회복지전달 체계의 합리적 개편으로 사회복지 종합기획·조정기능 보강에 중점을 두고 사회복지 전담인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2조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 “637명”을 “644명”으로 7명 증원하는 내용으로 입법예고 등 입법 필요절차를 거쳐 조례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조정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직은 “524명”에서 “531명”으로 7명 증원되는 사회복지직렬 7명은 본청 4명(6급 1명, 8급 2명, 9급 1명), 읍면 3명(7급 1명, 8급 1명, 9급 1명)씩 각각 증원되는 것으로 사회복지업무의 본청과 읍면간의 합리적 기능조정에 따른 정원조정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는 제출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 :

- 문 : 공무원 정원을 증원하여 읍면에 배치할 때 업무량이나, 민원접수 처리건수 등을 파악하여 인력을 배치하고 있는지 ?
- 답 : 온라인 민원확대 시행으로 고성읍에서 민원처리 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므로 금년 6월말 기준으로 읍면간의 민원처리 실적 등 업무량을 분석하여 차후에 읍면 공무원 정원조정을 재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 : 타시군과 비교 분석하는 등의 방법으로 읍면 공무원 정원조정으로 원활한 업무처리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람.
- 답 : 예, 잘 알았습니다.
- 문 : 2007년부터 총액인건비제 전면시행에 대비하여 비정규직으로 계속해서 일용직 채용문제 등 공무원 정원조정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기 바람.
- 답 : 공무원 정원문제는 예민한 사항으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차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 토 론 : 없음

7. 심사결과

- 2005. 7. 14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